

구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금천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2024. 11. 26(화) 10:00

제252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심사안건

# 검 토 보 고 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영상해설  
활성화 자원 조례안  
(복지가족국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복 지 건 설 위 원 회

전문위원 추병수

#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영상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 1. 제안경위

- 가. 의안번호 : 제2636호
- 나. 제 출 자 : 도병두 의원
- 다. 제출일자 : 2024. 11. 12.
- 라. 회부일자 : 2024. 11. 12.

## 2. 제안이유

시각장애인은 청각 또는 활자 정보에 의존할 수 밖에 없어 정보의 접근 및 사회활동에 한계가 있는 바, 문화·예술·체육 등 다양한 행사의 현장 상황이나 영상을 언어적으로 해설하여 제공하는데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여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 향상 및 사회 참여 편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 나.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 다. 현장영상해설 활성화 사업 및 지원(안 제5조 및 제6조)

## 4. 참고사항

- 가. 관련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9조 및 제22조, 「지방자치법」 제13조
- 나. 예산조치 : 필요시 예산조치
- 다. 입법예고 : 2024. 11. 15. ~ 2024. 11. 21.

## 5. 검토의견

### 가. 제정 이유

본 제정안은 시각장애인에게 행사의 현장 상황이나 영상을 언어적으로 해설하여 제공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정보접근 및 사회참여 증진에 기여하고자 의원발의됨.

### 나. 주요 내용

#### 1)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 현장영상해설과 사업 적용대상인 공공기관에 대한 정의를 규정함

#### 2)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 3) 현장영상해설 활성화 사업 및 지원(안 제5조 및 제6조)

- 공공기관 등에 현장영상해설을 지원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설치 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법인, 기관, 단체 등에게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규정함

### 다. 검토의견

- 「장애인복지법」 제4조에서 장애인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으며, 그에 걸맞은 대우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사회의 많은 분야에서 장애인이 겪는 불편함과 차별점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 특히, 시각장애인의 경우 비장애인에 비해 일상정보의 습득이 어려워 사회활동에 많은 제약이 있고, 이용 편의성이 매우 취약한 실정임.
- 본 안건에 대하여 해당부서에서는 「금천구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한 조례」를 통해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존 조례로 대체 가능하다고 의견을 제시하였음.

○ 하지만 본 조례안은 목적 대상을 시각장애인으로 하고 사업 수행을 금천구청 및 공공기관으로 명시한 점, 특히 매년 개최되는 다양한 구청 행사 및 공공시설 이용에 현장영상해설로 시각장애인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정책안을 규정한 것을 볼 때 기존 조례와는 시행효과가 다르다고 판단됨. 따라서 본 조례안은 시각장애인이 문화 활동이나 현장 행사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의원 입법 의지를 명확히 담아낸 것으로 조례 제정은 법령의 범위에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관계법령

## □ 「장애인복지법」

[시행 2024. 10. 22.] [법률 제20511호, 2024. 10. 22., 타법개정]

**제9조(국가 등의 책무)**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발생을 예방하고, 장애의 조기 발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며,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보호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을 진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정책을 장애인과 그 보호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국민이 장애인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2조(정보에의 접근)**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정보에 원활하게 접근하고 자신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방송시설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방송국의 장 등 민간 사업자에게 뉴스와 국가적 주요 사항의 중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송 프로그램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한국수어 또는 폐쇄자막과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 또는 자막해설 등을 방영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적인 행사, 그 밖의 교육·집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청각장애인을 위한 한국수어 통역 및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및 인쇄물 접근성바코드(음성변환용 코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표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삽입된 자료 등을 제공하여야 하며 민간이 주최하는 행사의 경우에는 한국수어 통역과 점자 및 인쇄물 접근성바코드가 삽입된 자료 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제2항과 제3항의 요청을 받은 방송국의 장 등 민간 사업자와 민간 행사 주최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각장애인과 시청각장애인(시각 및 청각 기능이 손상된 장애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점자도서, 음성도서, 점자정보단말기 및 무지점자단말기 등 의사소통 보조기구를 개발·보급하고,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의사소통 지원 전문인력을 양성·파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⑥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보통신망 및 정보통신기기의 접근·이용에 필요한 지원 및 도구의 개발·보급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 「지방자치법」

[시행 2024. 5. 17.] [법률 제19951호, 2024. 1. 9., 타법개정]

**제2조(정의)**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민의 복지증진

라. 노인·아동·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